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이 국가 등의 출자·출연을 받아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할 수 없다¹⁾고 규정하는바, 국제경기대회의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런데,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12조의2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별 조직위원회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비로소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해지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시행 전에는 ① 원칙적 접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②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²⁾에도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는 등 기부금품법에 따라야 함.

그러므로 안 제12조의2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직위원회가 접수한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삭 제>

그 밖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①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모집자의 의뢰에 따라 단순히 접수된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경우, ③ 국가나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도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음.